
Policy and Law Report _Vol.96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7.24 ~ 8.1) -

August 2,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p>•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p> <p>「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의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규모)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 33조원 대비 +1.9조원 확대한 34.9조원으로 확정 (2.6조원 증액, 0.7조원 감액) ② (증액) 소상공인, 국민지원금, 방역, 민생지원 등 중점 투자 - 증액규모(2.6조원)의 50% 이상(1.4조원)을 소상공인에 지원 ③ (감액) 방역상황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 소비쿠폰 등 추경사업 0.7조원 감액, 그 외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등 활용 ④ (채무상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국채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채상환 규모는 정부안 2조원 유지 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5.7→17.3조원(+1.6조원)으로 지원 확대 등이 있음 	<p>2021-07-24</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 지능형 사물인터넷 5대 전략분야 대표 7대 과제 본격 추진</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고, 선도적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힘</p> <p>올해부터는 개인·소상공인, 디지털 건강관리,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의 5개 전략분야 중심으로 7개 대표 과제를 집중 지원하기로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실내 공기질 관리 시스템 (개인·소상공인 지원) ② 사물인터넷 적용 가상현실/증강현실 재활치료시스템 (디지털 건강관리) ③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통합관제 서비스 (안전관리) ④ 인공지능 반자율운전 신재생에너지 하베스팅 시스템 (에너지) ⑤ 지능형 사물인터넷 통합 저온 유통 서비스 (물류·교통) ⑥ 중소장비 제조기업용 예측정비 서비스 (제조) ⑦ 지능형 사물인터넷 로봇틱 약기 등 기반 비대면 공연장 (엔터테인먼트) 등이 있음 	<p>2021-07-27</p>

부처	내용	일시															
중소벤처 기업부	<p>•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 발표</p> <p>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및 재기 촉진방안」을 발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사업전환 제도 대폭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업종간 전환으로 제한돼 있던 사업전환 지원대상을 동일업종 내 유망품목 전환까지 확대하고, 「사업전환법」 개정 추진 <p style="text-align: center;">< 사업전환 인정범위 확대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5%;">전환 유형</th> <th style="width: 35%;">주요 내용</th> <th style="width: 40%;">적용범위(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존</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 업종변경</td> <td>- 업종 전환(100% 전환) - 업종 추가(30% 이상 전환)</td> <td>- 연관/비연관 업종간 전환·추가 * (예시)식품유통→식품제조 병행</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확대 (추가)</td> <td style="text-align: center;">② 유망품목 전환</td> <td>- 미래 유망제품 생산 전환 -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td> <td>- 내연기관→미래차 부품 생산 - 단품 소매판매→구독서비스 제공</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③ 사업모델 혁신</td> <td>-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제품·서비스 제공방식/ 채널 전환</td> <td>- 로봇 서빙, 무인판매 등 디지털 전환 -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채널 전환</td> </tr> </tbody> </table> <p>② 신용 B등급이고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채무를 보유한 기업이 워크아웃 단계에 직면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영 안정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구조조정 제도는 기업(채무자) 신용 C등급 이하 위주로 적용 가능하며, 대부분 총 채무 1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p>③ 노란우산공제 가입 유도, 폐업 사업자 보증* 시행 등 실패 후 생활 안전망 확보를 지원하고, 부실채권 소각 확대를 통해 신속한 재기 지원 등이 있음</p> <p>*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도래 시 개인 보증으로 전환 및 보증 유지</p>	구분	전환 유형	주요 내용	적용범위(예시)	기존	① 업종변경	- 업종 전환(100% 전환) - 업종 추가(30% 이상 전환)	- 연관/비연관 업종간 전환·추가 * (예시)식품유통→식품제조 병행	확대 (추가)	② 유망품목 전환	- 미래 유망제품 생산 전환 -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	- 내연기관→미래차 부품 생산 - 단품 소매판매→구독서비스 제공	③ 사업모델 혁신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제품·서비스 제공방식/ 채널 전환	- 로봇 서빙, 무인판매 등 디지털 전환 -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채널 전환	2021- 07-23
구분	전환 유형	주요 내용	적용범위(예시)														
기존	① 업종변경	- 업종 전환(100% 전환) - 업종 추가(30% 이상 전환)	- 연관/비연관 업종간 전환·추가 * (예시)식품유통→식품제조 병행														
확대 (추가)	② 유망품목 전환	- 미래 유망제품 생산 전환 - 새로운 서비스 개발/제공	- 내연기관→미래차 부품 생산 - 단품 소매판매→구독서비스 제공														
	③ 사업모델 혁신	- 비즈니스 모델 혁신 - 제품·서비스 제공방식/ 채널 전환	- 로봇 서빙, 무인판매 등 디지털 전환 -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채널 전환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식약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p> <p>「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 ②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펀(Fun)슈머 제품의 판매가 제한 ③ 해외 수입식품 제조소 비대면 조사 등 안전관리 강화 ④ 맞춤형화장품 관리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 ⑤ 사용단계에서의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⑥ 거짓이나 부정한 허가 등에 대한 제재기준 마련 등이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 주요 법안 내용 ></p>	2021-07-2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주요 법안명 (약칭)</th> <th style="width: 60%;">주요내용</th> <th style="width: 20%;">시행</th> </tr> </thead> </table>		주요 법안명 (약칭)	주요내용	시행		
	주요 법안명 (약칭)		주요내용	시행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식품 등 표시·광고법</td> <td style="width: 60%;">•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td> <td style="width: 20%;">공포 후 1개월</td> </tr> <tr> <td>•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td> <td>2023년 1월 1일</td> </tr> </table>		식품 등 표시·광고법	•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공포 후 1개월	•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
	식품 등 표시·광고법			• 생활용품 등과 유사한 식품의 표시·광고 금지	공포 후 1개월		
			•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	2023년 1월 1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3"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수입식품법</td> <td style="width: 60%;">• 감염병 발생 시 해외 제조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td> <td style="width: 20%;">즉시시행</td> </tr> <tr> <td>•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2억원→10억원) • 위해(우려) 해외식품 정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td> <td>공포 후 6개월</td> </tr> </table>		수입식품법	• 감염병 발생 시 해외 제조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즉시시행	•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2억원→10억원) • 위해(우려) 해외식품 정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공포 후 6개월
	수입식품법			• 감염병 발생 시 해외 제조소 비대면 조사 근거 마련	즉시시행		
				•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상향(2억원→10억원) • 위해(우려) 해외식품 정보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	공포 후 6개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화장품법</td> <td style="width: 60%;">•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td> <td style="width: 20%;">즉시시행</td> </tr> <tr> <td>•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td> <td>공포 후 1개월</td> </tr> </table>	화장품법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즉시시행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화장품법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및 벌칙 부과 근거 마련(마약법, 인체조직법 공통)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발급 관리 명확화	즉시시행					
	•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공포 후 1개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rowspan="2"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의료기기법</td> <td style="width: 60%;">• 품목허가 등 갱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기준 등 마련 • 갱신제도 도입 이전 허가 제품 유효기간 연장</td> <td style="width: 20%;">즉시시행</td> </tr> <tr> <td>•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구, 재심사) 제도 정비 • 국민 건강 위해 발생(우려) 의료기기 회수·폐기 실시</td> <td>공포 후 6개월</td> </tr> </table>	의료기기법	• 품목허가 등 갱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기준 등 마련 • 갱신제도 도입 이전 허가 제품 유효기간 연장	즉시시행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구, 재심사) 제도 정비 • 국민 건강 위해 발생(우려) 의료기기 회수·폐기 실시	공포 후 6개월		
의료기기법		• 품목허가 등 갱신하지 않은 자에 대한 벌칙 기준 등 마련 • 갱신제도 도입 이전 허가 제품 유효기간 연장	즉시시행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구, 재심사) 제도 정비 • 국민 건강 위해 발생(우려) 의료기기 회수·폐기 실시	공포 후 6개월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10.28. 시행예정)</p> <p>등록된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소음·분진·오수·폐수·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제27조 신설)</p>	2021-07-27
	<p>•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 1. 28. 시행예정)</p> <p>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 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p> <p>또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정의 (제2조)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 (제8조의2 신설) ③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 (제10조의3 신설) ④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 (제11조의2제1항·제2항) ⑤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 (제11조의2제3항 신설) ⑥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 (제11조의2제7항)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제11조의2제7항·제8항 및 제16조제2항) ⑧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히 함 (제11조의3제2항) 	2021-07-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⑨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제11조의3제4항 및 제5항)</p> <p>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근거를 마련 (제11조의4 및 11조의5 신설)</p>	
국토교통부	<p>•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10.28. 시행예정)</p> <p>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건축법」 또는 「주택법」과 달리 건축물 해체 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도의 착공 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가권자가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등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p> <p>또한 건축물을 중장비를 사용하여 해체하거나 폭발하여 해체하는 경우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러한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실정임</p> <p>이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공사를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제30조의3, 제31조제4항, 제52조제7호, 제54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p>	2021-07-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1.28. 시행예정) <p>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지능화 및 연결성 확대는 해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p> <p>이에 도로의 노변기기와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p> <p>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p>	2021-07-27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기획재정부</p>	<p>•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p> <p>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 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상 검증을 강화하며,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함</p> <p>한편,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적격 요건 완화 (안 제44조제2항제3호) -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p> <p>②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신설 (안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의 경우로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p> <p>③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 (안 제51조의2제1항제2호 및 부칙 제1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128호로 개정)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함</p> <p>④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안 제57조의2 삭제, 제57조제1항, 제73조제1항) -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를 삭제하고, 대신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투자자에 배당 지급시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배당 이외의 소득의 경우 투자자인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투자신탁·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도록 함</p>	<p>2021-07-27</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⑤ 성실신고확인제 적용대상 범위 보완 (안 제60조의2제1항) -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후 3년 이내에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추가</p> <p>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보완 (안 제62조의2제1항) -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종전의 주식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대상에서 주식을 제외함</p> <p>⑦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식 신설 (제63조의2에 제6항) -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업종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규정함</p> <p>⑧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 (안 제74조의2)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사실과 다른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비용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p> <p>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 (안 제75조) - 법인세 산출세액을 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p> <p>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완화 (안 제75조의7) - 소규모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p> <p>⑪ 국외투자지구 실질귀속자 인정 요건 명확화 (안 제93조의2제1항) - 국외투자지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해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p> <p>⑫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 (안 제94조의2 신설) - 국내사업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로 하여금 매년 2월10일까지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p> <p>⑬ 과세자료 제출 관련 명령사항위반 법인에 대한 과태료 신설 (안 제124조) - 「소득세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p> <p>※ 의견제시기간 : 7/27(화)~8/12(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로 제출</p>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p>•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의 친족 포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신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한도를 인상하였음</p> <p>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의 범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기숙사 거주인원 축소,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현행화 등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등을 정비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정비 (안 제2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출산전후휴가 만을 명시하고 있어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는 해석상 혼동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산·사산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자 함 ②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정비 (안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는 사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준용하고 있어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확인서를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게 되나, 확정판결이나 체불확인서는 지연이자 적용 제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용제외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함 ③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비 (안 제27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임금대장 기재사항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 변경하도록 함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안 제27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총액,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함 ⑤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의 허용예외 사유 및 신청절차 마련 (안 제43조의3 및 제43조의4 신설) ⑥ 기숙사 주거환경 정비 (안 제55조 및 제57조) ⑦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친족 범위 신설 (안 제59조의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의 친족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함 	2021-07-2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⑧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별표 2)에 반영</p> <p>⑨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개정 (안 제13조 관련 별표 3)</p> <p>⑩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현행화 (안 40조 관련 별표 4)</p> <p>⑪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마련 (안 제60조 관련 별표 7) - 제116조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직장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간 조정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가중처분 기준 등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괄 정비</p> <p>※ 의견제시기간 : 7/29(목)~9/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p>	
중소벤처기업부	<p>•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의 대상, 신청, 환수, 이의신청 및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자체 위임에 관한 내용 신설 및 개정(제4조의6, 제4조의7, 제4조의8, 제4조의9, 제4조의10, 제4조의11, 제4조의12, 제4조의13, 제4조의14 신설, 제12조 개정) 등이 있음</p> <p>※ 의견제시기간 : 7/30(금)~9/8(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로 제출</p>	2021-07-30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0인)」</p> <p>2020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 중 반도체 수출은 992억 달러로 전체 산업 수출의 19.4%를 담당하고 있고, 2013년부터 수출 비중 1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미미한 편에 속해 향후 반도체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의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임</p> <p>이에 반도체 연구·인력개발과 시설투자비용에 대하여 기업 유형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아니하고 공히 100분의 50 비율에 의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안 제10조의3 및 제24조)</p>	2021-07-26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이 수정되었을 경우 이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 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내용 변경 사항의 고지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p> <p>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는 게임 내 변경사항을 수시로 공지하고 있지만, 일명 “잠수함패치 (이용자에게 별도의 공지없이 업데이트 하는 것을 의미함)”라 불리는 누락사항들이 이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게임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한 이용자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용자에게 알릴 것을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28조제3호의 2 및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p>	2021-07-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p> <p>최근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 전체가 불에 타고,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물류창고 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워 결국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물류창고에 사용된 가연성 내장재(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등) 등 마감재료의 특성 또한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p> <p>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2항 후단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p>	2021-07-28
국토교통위원회	<p>•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p> <p>현행법령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이후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확보하고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등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건축사업에 비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p> <p>이에 허가권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10항 단서 신설)</p>	2021-07-29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8/6(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49호 발간	
국회도서관	8/3(화)	현안입법 알리기 발간 -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입법조사처	8/2(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 ‘정책자료’와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총 9권으로 구성	
	주중	「이슈와 논점」 발간 -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사업(도로 입체화)에 따른 영향과 과제 - ‘기사형 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래연구원	8/4(수)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24호 발간 -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아젠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3(화) 10:00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국회토론회	강득구 의원실, 경기도	글래드호텔 볼룸A홀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28(수) 10:00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환시대! 초기업교섭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강은미, 이수진, 장철민 의원실	ZOOM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